

서울특별시보

등록번호 제 39호
 등록년월일 1953년 6월 18일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편집인 공보실장 최기호
 인쇄 국제출판인쇄주식회사

차례

△조례	13350
제 455 호 서울특별시 주민등록 수수로 정수 조례증 개정	
△규칙	13350
제 605 호 서울특별시 직제증 개정	
제 606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경원 규칙증 개정	
제 607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경원 규칙증 개정	
제 608 호 1966년도 서울특별시 자동차 대수 기준 규칙	
제 609 호 서울특별시 경찰관 파출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 구역의 전증 개정규칙	
제 610 호 서울특별시 지정 자동차 교습소 규칙	
제 611 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증 개정	
△통령령	13382
제 224 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위임전결 규정	
△사령	13384
△고시	13400
제 1087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88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89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90호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 결정	
제 1091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	

(2) 차 래

- 제 1092호 사방지정지 해제
제 1093호 서울특별시 가로명 제정
제 1094호 석유류 판매 규칙 개정에 따른 고시
제 1095호 도로 수익자 부담금 부과종액 결정
제 1096호 등화유 판매 가격 고시

△금 고..... 13411

- 제 184 호 시유전 물(철거 조건부) 매각 입찰
제 185 호 부동산 압류 통지서 공시 송달
제 186 호 오물처 분장 제 입찰
제 187 호 시유전 물(철거 조건부) 매각 입찰
제 188 호 간호원 취업희망자 등록 실시
제 189 호 체비자 매각 입찰
제 190 호 시유재산 매각 처분
제 191 호 시유전 물(철거 조건부) 매각 입찰
제 192 호 1966년산 추곡수납 장소별 일자 결정
제 193 호 분담금 납입고지서 공시 송달
제 194 호 분묘 이장
제 195 호 조리사 강습 시행
제 196 호 자가용 자동차 등록
제 197 호 시유전 물(철거 조건부) 매각처분
제 198 호 토지 세목 공고
제 199 호 입찰결과 보고 및 제 입찰
제 201 호 주택건설용 대지 분양
제 202 호 분담금 납입 독촉장 공시
제 203 호 환지 예정지 지정

조례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은 서울特別市 住民登錄手數料徵收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서기 1966年 11月 25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條例第455號

서울特別市住民登錄手數料

徵收條例中 改正條例

서울特別市住民登錄手數料徵收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1項各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住民登錄票의 開覽 1回에 10원
2. 住民登錄票의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 1枚에 20원
3. 住民登錄票의 謄本 또는 抄本의 記載事項에 變更이 없다는 證明 1通에
10원

附 則

이 條例는 서기 1966年 11月 18일부터 適用한다

규칙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605호

서울특별시 직제중 개정규칙

(4) 규 칙

서울특별시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중 제1호 “감사제1담당관” 및 제2호 “감사제2담당관”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사제1담당관

- 가. 회계감사와 동 감사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계획수립
- 나. 국정감사 감사원감사등 외부감사에 대한 수감준비 및 사후처리
- 다. 감사관소속 타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감사제2담당관

- 가. 감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 나.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특별감사
- 다. 각종 감사자료의 수집

제8조(예산과)제2항 제2호 “예산제2계”의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산제2계

- 가. 공기업제도의 연구
- 나. 기체에 관한사항(제수도사업비 및 운수사업 특별회계)
- 다. 일반회계 중 건설사업비 및 도시계획비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 라. 기업회계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 마. 기업회계로 처리되는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제21조의 2(운수사업과) 제2항 제3호 “재무계” 분장사무중 “나”를 다음과 같
이 한다

- 나. 운수사업비 특별회계 예산배정 및 결산

제33조(상무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상무과) 1) 상무과에 상경계 시장계와 계량계를 두고 상경계장과 시
장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계량계장은 기제기좌 또는 지방기제기좌로
보한다

2) 상무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경계

- 가. 국 소관행정의 종합조정

- 나. 상공회의소 기타 상업단체의 지도감독
 - 다. 상도의 양양
 - 라. 국내 서무 및 국내 타파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시장체

- 가. 시장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 나. 시장 및 백화점 개설허가
- 다. 소비자 보호 물가조사 및 물가조정에 관한사항
- 라. 서울특별시 물가조정위원회 운영
- 마. 경찰제실시 및 시범점포 지도육성
- 바. 생활필수품의 품질조사

3. 계량체

- 가. 계량의 연구 및 조사
- 나. 계량기 검사 및 검정
- 다. 메타법 실시에 관한사항
- 라. 계량기 사업관리

제33조의 2(공업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 2(공업과) 1) 공업과에 공정계 중소기업의 수출전용제와 연고제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 공업과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계
- 가. 공업지역 조성 및 개발
 - 나. 열파 조선에 관한사항
 - 다. 공업 표준화
 - 라. 자동차조립 공장지도
 - 마. 공업단체 지도육성
 - 바. 우량공산품 장려위원회 운영
 - 사. 국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중소기업체

(6) 규 칙

- 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 나. 중소기업가동상황조사
- 다. 중소기업지도위원회 운영
- 라. 중소기업의 시비 융자금 관리
- 마. 정부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융자대상업체추천

- 바. 중소기업협동조합재정보조
- 사. 특화 및 성장산업육성
- 아. 공장등록 및 실태조사
- 자. 생산신고 및 물동계획
- 차. 공장통제 및 제증명 발급

3. 수출진흥체

- 가. 수출진흥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 나. 수출시장조사 및 개척
- 다. 수출용 원자재 관리
- 라. 수출업체 조성 및 수출강려
- 마. 수출관계 제반통계
- 바. 수출업체 및 군납업체 신고
- 자. 수출금지 및 수입원료승인과 사후관리
- 아. 우량공산품 장려

4. 연료체

- 가. 연료에 관한 방침과 기회수립
- 나. 원탄배정
- 다. 주연탄수급생산에 관한 통제감독
- 라. 석유류 까—스열관리 의제연료 대용연료의 수급및관리
- 마. 연탄공장의 지도감독 및 일반의 시외반출단속
- 바. 공업에 관한사항
- 사. 서울특별시 연료매체위원회 운영
- 아. 자가용 전기 공작물에 관한사항

제 44조(주체파) 제 2항 제 1호 “예산계” 분장사무중 “다”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산계

다. 상수도사업비예산집행

라. 상수도사업비의 배정 및 결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기 196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60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윤류란의 “지방행정사무관 189인”을 “지방행정사무관 190인”으로

“지방기계기과 2인”을 “지방기계기과 3인”으로

“지방전축기과 6인”을 “지방전축기과 5인”으로

“계 319인”을 “계 320인”으로 한다

5급 잡류란의

“지방행정서기 1,115인”을 “지방행정서기 1,114인”으로

“계 1,678인”을 “계 1,677인”으로 한다

5급 윤류란의

“지방행정서기보 1,558인”을 “지방행정서기보 1,556인”으로

“지방보건기원보 50인”을 “지방보건기원보 51인”으로

“계 2,415인”을 “계 2,414인”으로 한다

“공무원계 6,284인”을 “공무원계 6,283인”으로

“기능직 계 832인”을 “기능직 계 821인”으로

(8) 규 칙

“고용원 계 1,073인”을 “고용원 계 1,085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서기 1966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서기 1966年 11月 17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07號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規則中改正規則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地方公務員定員表中 다음과 같이 한다

“2級乙類欄”앞에 別定職「秘書(3級乙類相當) 3」「別定職計 3人」을 加한다

3級乙類欄中「地方行政事務官 190」을 「地方行政事務官 191」로 하고 「計 320人」을 「計 321人」으로 한다

4級乙類欄中「地方行政主事補 455」를 「地方行政主事補 454」로 「計 874人」을 「計 873人」으로 한다

5級乙類欄中「地方行政書記補 1,556」을 「地方行政書記補 1,553」으로 「計 2,414人」을 「計 2,411人」으로 한다

「地方公務員計 6,283人」을 「別定職 計3人」과 「一般職計 6,280人」으로 「技能職 821人」을 「技能職 816人」으로 「雇傭員 1,085人」을 「雇傭員 1,090人」으로 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서기 1966年度서울特別市自動車臺數基準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서기 1966年 11月 17日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特別市規則第608號

서기 1966年度서울特別市自動車臺數基準規則

第1條 (目的) 이規則은 自動車運輸事業法 第6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交通量 基準(以下 “自動車臺數基準”이라한다)을 大統領令第2070號에 依據서 울特 別市 自動車臺數基準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市內버스旅客自動車運送事業의 區分) 市內버스旅客自動車運送事業은 一般市內버스旅客自動車運送事業(以下 “一般市內버스”라한다) 急行座席버스旅客自動車運送事業(以下 “急行座席버스”라한다) 一般座席버스旅客自動車運送事業(以下 “一般座席버스”라한다) 및 半座席旅客自動車運送事業(以下 “半座席버스”라한다)으로 區分한다.

第3條 (自動車臺數基準策定의 一般原則) ① 서울特別市自動車臺數基準은 原則적으로 交通量의 變動結果에 依한 交通需要에 次期基準策定時까지의 增減豫測量, 人口增加率, 經濟成長率, 其他 諸統計資料를勘案한 判斷値을 適正交通量으로 한다.

② 交通需要를 判断함에 있어서는 對市民 쌓아올려上去을 保障하기 위한 最大目標値를 策定한다.

③ 前項의 判断値를 策定함에 있어서는 地域別 特殊實際이나 住民의 陳述事項의 申請等을 充分히勘案하여 利用客의 要望에 適應하도록 한다.

④ 交通手段의 配分은 大衆交通手段을 優先도록 한다.

⑤ 서울特特別市 全般的인 交通難緩和를 目的으로 하는 大衆交通手段은 供給能力과 道路疎通이 許容하는範圍에서 制限없이 別途로 自動車臺數基準을 變更策定할 수 있다.

⑥ 自動車臺數基準은 季節적으로 需要變動에 適應하기 위하여 分別로 1年4回策定함을 原則으로 하며 當年度(當期分) 臨數基準은 前年度(前期分)策定當時의 臨數를 適正 臨數로 하여 策定한다.

第4條 (細部基準) ① 一般市內버스의 臨數基準은 人口增加率과 交通量增加率을 基礎로하여 別表2의 算出方式에 따라 最大值가 되도록 加重値를 適用하여 別表1과 같이 定한다.

② 急行座席버스의 臨數基準은 人口增加率과 交通量增加率을 基礎로하여 别表2의 算出方式에 따라 最大值가 되도록 加重値를 適用하여 别表1과 같

이定한다. 다만 急行座席버스의 交通量은 新規吸收交通量임을勘案하여 初回에 限하여 增加率 100%를 50%로 看做 算出한다.

③ 市內合乘(一般座席버스)의 臺數基準은 人口增加率과 交通量增加率을 基礎로하여 別表2의 算出方式에 따라 最大值가 되도록 加重值를 適用하여 別表1과 같이 定한다.

④ 택시 및 專賞旅客自動車臺數基準은 人口增加率, 交通量增加率, 經濟成長率을 基礎로 別表3의 算出方式에 따라 最大值가 되도록 加重值를 適用하여 別表1과 같이 定한다. 다만 行政施策(料金調整等)에 依한 交通需要의 適正調整이 있었을 境遇에는 調整된 適正交通量을 基準으로 하여 增加率을 算出하며 算出諸元中 增加率의 把握이 困難한 境遇에는 把握된 增加率만을 基礎로 定할 수 있다.

⑤ 區域貨物自動車의 臺數基準은 經濟成長率과 物動量 增加率을 基礎로하여 別表4의 算出方式에 따라 最大值가 되도록 加重值를 適用하여 别表1과 같이 定한다. 다만 物動量增加率의 把握이 困難한 境遇에는 全叢積 乘客交通量增加率로 代替할 수 있다.

⑥ 葬儀 및 特殊自動車의 臺數基準은 當該年度(當該分割) 臺數基準에 制限 없이 臺數基準을 超過하여 親規免許 또는 變更免許를 先行하고 次期基準이 變更確定時 變動臺數에 따라 策定할 수 있다.

附則

① (施行日) 이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合乘의 大型化 轉換方針에 따라 市內合乘基準은 一般座席버스로 1對1 原則으로 轉換할 수 있다.

③ 一般市內버스 臺數基準中 65年度增加臺數基準인 262臺와 66年度增加臺數基準 177臺는 市內버스 多元化計劃의 交通部長官承認에 따라 半座席버스로 换算轉換한다.

④ 1965年度 서울特別市自動車交通量基準規則(규칙 제538호 1966. 2. 23)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自動車交通量基準(臺數基準)中 未處理基準은 1966年度 서울特別市自動車臺數基準에 包含하여 處理한다.

④ 이 自動車臺數基準施行에 따르는 細部事項은 別途定한다

서울特別市自動車臺數基準

別表 1

渠種	1965年度 臺數基準	增加臺數 基準	1966年度 臺數基準	備考
一般市內버스 (半座席버스)	1,349	177 (-262) (680)	1,526 (1,087) (680)	()는 半座席버스 로 轉換될 時遇의 臺數基準
急行座席버스	363	182	545	
一般座席버스 (合乘)	1,290	92	1,382	
택시	4,802	821	5,623	
專 貨	253	32	285	
區域貨物	2,767	351	3,118	
特殊自動車	66	36	102	36臺는 65年度基準 超過免許分
非 儀	61		61	
計	10,951	1,691 (1,932)	12,642 (12,914)	()는 半座席버스 로 轉換될 時遇의 臺數基準

別表 2

一般市內버스 急行座席버스 및 一般座席버스의 臺數基準策定方法은 아래와 같다

$$V = V'(1+R)$$

$$R = RPW + RTW$$

V——臺數基準

V'——前年度(前分期) 臯數基準

RP——人口增加率

RT——交通量增加率

ww'——加 重 值

別表 3

택시 및 專貨 臯數基準策定方法은 아래와 같다

$$V = V'(1+R)$$

$$R = RPw + RTw + GRw$$

V——臺數基準

V'——前年度(前分期)臺數基準

RP——人口增加率

RT——交通量增加率

GR——經濟成長率

w.w.w——加重值

別表 4

區域貨物自動車의 臺數基準策定方法은 아래와 같다

$$V = V'(1+R)$$

$$R = Grw + Gfw$$

V——臺數基準

V'——前年度(前分期)臺數基準

Gr——經濟成長率

Gf——物動量增加率

w.w'——加率值

서울特別市 警察官派出所의 名稱位置와 管轄區域의 件中改正 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11月 21日

서울特別市長

◎서울特別市規則第609號

警察官派出所의 名稱位置와 管轄區域의 件中 改正規則

警察官派出所의 名稱位置와 管轄區域의 件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警察官派出所의 名稱位置와 管轄區域表中 다음과 같이 한다

1. 管轄區域 變更

管轄署	名稱	位 置	管 轄 區 城	
			新	舊
中 部	明洞派出所	明洞2街 53의 13	明洞1街中 19-25 〃 27-103 明洞1街 1-78 明洞1街 1-3 〃 33-108 南大門路2街中 8-34 乙支路3街中 195의 3 199의 1-14號 199의 35-61號	明洞1街 1-103 明洞1街 1-73 明洞2街 1-108 (除 31의 4-7, 10-11號) 南大門路2街中 3-34
	忠武路 2街 派 出 所	忠武路 2街 63의 3	忠武路 1街中 1-25 忠武路 2街中 5-12 〃 60-65 明洞 2街中 4의 19- 29, 31, 32	忠武路 1街 1-25 忠武路 2街 5-11 61-65 明洞 2街中 31의 4 7-10, 11號
	永蘿洞派出所	享洞2街62	草洞中 1-S° 42-88 享洞 2街 1-88 享洞 1街中 1-18, 26 忠武路3街中 1-30 40-56, 58	草洞1-170, 18-5 享洞 2街 1-88 忠武路 3街 1-50 忠武路 2街中 48-50 忠武路2街中 13-47 48-49 51-59 筆洞 1街中 3-44 忠武路 3街中 57-59 筆洞 1-49 藝場洞 1-8 南學洞 1-25
	鑄字洞派出所	藝場洞3의 2		筆洞 1街 1-56 주자洞 1-49 藝場洞 1-8 南學洞 1-25

(14) 구 칙

	忠武路 4街 派 出 所	忠武路 4가 27	忠武路4가中 1-48 仁峴洞 1가 1-141 〃 2가 1-230 筆洞 1街中 10-14 忠武路 3街中 31-39 草洞中 30-41 筆洞2가 19의 16	1-155 仁峴洞 1街 1-141 仁峴洞 2街 1-230 草洞中 18의 5號 筆洞2街 1-134 筆洞 3街 1-79
	忠武路 5街 派 出 所	忠武路 5街 61	忠武路 5街中 23-80 藝場洞 1-136 五壯洞 13-100. 127 145-148 忠派路 4街中 48-82 墨井洞 1-31 忠武路 5가中 1-22	忠武路 5街 1-80 藝場洞 1-136 五壯洞 3-148 墨井洞 1-31 五壯洞 173-179 180-184 186-196 獎忠洞 2街中 167-173 174. 193 五壯洞中 101-126 〃 128-144 〃 146-147 〃 149-172 〃 193-206
	墨井洞 派 出 所	獎忠洞2가 173 -7	乙支路 6街 派 出 所	乙支路 6街 18의 21
			乙支路6街中 18의 21 乙支路7街中 3-136 (除 1.2)	乙支路6街中 18의 19-77 乙支路 7街中 1-136 光熙洞 1가中 1-194 240-303

		光熙洞 1가 1-194 264-303
乙支路 4街 派出 所	乙支路 4가 29	乙支路5街中 38-53 72-161 127-277
		五壯洞中 173-196
		乙支路 4街 1-340
		乙支路 5街中 1-E7 54-71 162-274
		山林洞 1-199
		山林洞 1-300
乙支路 3街 派出 所	乙支路3街29	乙支路 3街 1-350 笠井洞 1-290
		水標洞中 3-43
		山林洞中 200-300
乙支路 2街 派出 所	乙支路 2街 195의 11	乙支路 1-199 (除 195의) 3號 1-14號 139의 35-61號 三角洞 1-116 水下洞 1-65 長橋洞 1-72 南大門路 1街中 9-11.14-17.19-22 南大門路 2街中35 水標洞 1-2.44-99
		光熙洞 2가 1-364 光熙洞 1가中 195-263
		雙林洞 1-293 獎忠洞 1街 1-120 (除 60. 62) 獎忠洞 2가中 1-160
退溪路 6街 派出 所	雙林洞 257	光熙洞 2가 1-364 光熙洞 1街 195-239 雙林洞中 1-35 長忠洞 1가 1-120 (除 60. 62) 獎忠洞 2街 1-185
獎忠洞派出所	獎忠洞 2街 57의 3	

				186—192	雙林洞中 36—85 115—293
	內派 出 資 所	內需洞 236	內資洞 內需洞		內資洞
西	新派 門 出 路 所	新門路 2街 1—14	新門路 2街 唐珠洞 新門路 1中		內需洞 1—109 新門路 2街 唐珠洞 1街中 20—119, 187—237
	鍾路 1 街 派 出 所	鍾路1街 53	仁寺洞 135—180 190—263 公平洞中 1—103 鍾路 1街中 39—68 鍾路 2街中 1—18 74—101 瑞麟洞中 1—50 貢鐵洞中 214—300		仁寺洞 公平洞 1—103 鍾路 1街中 37—68 鍾路 2街中 1—30 69—101
	光化門派出所	世宗路 210	瑞麟洞中 51—163 新門路 1街中 1—19 121—186 世宗路中 107—213 鍾路 1街中 1—38 69—99		瑞麟洞 新門路 1街中 1—19 121—186 世宗路中 107—213 鍾路 1街中 1—38 69—99
南	觀水派出所 鍾路 2 街 派 出 所	貢鐵洞 5 鍾路 2街45	觀水洞 貢鐵洞中 1—213 樂園洞 鍾路 2街中 19—73 鍾路 3街中 1—15 86—122 仁寺洞中 1—134 181—189		觀水洞 貢鐵洞 樂園洞 鍾路2街中 31—66 鍾路三街中 1—15 86—122
大					
門					

	南大門路三街 派 出 所	南大門路三街 110	會賢洞 1街 1—99 195—204 南大門路 2街 123 南大門路 3街 10—110 小公洞 112	會賢洞 1街 1—99. 195—204 南大門路 2街 123 南大門 3街 10—110
	北倉洞派出所	南大門路4 街 17—12	太平路 2街 52—330 南大門路 4街 17 北倉洞 1—157	太平路 2街 52—330 南大門路 4街 17 北倉洞 137—157
	太平路派出所	貞 洞 5	武橋洞 小公洞 46—51 111 太平路 1街 1—30 32. 60—74 太平路 2街 1—50 353—370	武橋洞 小公洞 46—51 111—112 北倉洞 1—136 太至路 1街 1—30 32. 60—74 太平路 2街 1—50 553—570
	會賢洞派出所	會賢洞1街194	貞 洞 5 會賢洞 1街 1—45 62—66. 82. 10. 11. 12號正 83—98. 99(2—6. 8. 9. 11. 13—21號包含 160—202 會賢洞 2街 1—48 52—55 60—78 會賢洞 3街 會賢洞 1街 46—61 67—82(82의 10. 11. 12號 除) 99. 1. 7. 10. 12. 23. 24포함 100—159	貞 洞 5 會賢洞 2街 會賢洞 3街 會賢洞 1街 100—195 挑洞 2街 66—67 厚岩洞山 1 (北側)
	南山派出所	會賢洞1街山1 1의 2		



西 大 門	西大門派出所	義州路1街47	會賢洞 2街 49—52 56—59 桃 洞 2街 66—67 厚岩洞山 1(北側) 忠正路 1街 2街 冷泉洞 平洞 橋南洞中 1—58 117—160 紅把洞 松月洞 否材洞中 1—204 橋南洞中 59—116 橋北洞中 6—100 110—125 玉川洞 天然洞 靈泉洞 橋北洞中 101—109 大東洞中 除123— 125. 132—142 ○疎礪洞中山2 山4—山8 山31 山34 山37 山42 山45 1—20 22—35—72—152 163—173	忠正路 1街 2街 冷泉洞 平洞 松月洞 橋南洞中 1—58 紅把洞 117—160 否材洞 1—204 橋南洞中 58—116 橋北洞中 6—125 玉川洞 夫然洞 靈泉洞 大東洞 ○疎礪洞中山2 山4—山8 山31 山34 山37 山42 山45 1—20 22—35 9—10. 152 166—173
	橋南派出所	橋南洞101의1		
	橋東派出所	靈泉洞167의6		
	大東派出所	大東洞 13의1		
	佛光派出所	佛光洞 226	佛光洞 1—44 107—309 329—335 354—355 422—427	佛光洞
	葛峴派出所	佛光洞 482	葛峴洞 龜山洞 大東洞中 123—125	葛峴洞 龜山洞

			132—142
			佛光洞中 45—106
			310—328 336—350
			356—421 428—484
應岩派出所	應岩洞321의2	應岩洞中	應岩洞中
		山7의5—山8	山7의5—山8
		227—422	227—422
		419—420	419—420
		437—443	439—443
		451—454	451—454
		456—487	456—487
		483—474	487—474
		476—505	476—505
		507—559	507—559
		新寺洞中 56—39	鶴山洞
		291—308	新寺洞中 56—279
		北加佐洞中 1—7	291—308
		山1—山10	
			291—318
水色派出所	水色洞106의1	水色洞 上岩洞	水色洞 中洞
		鶴山洞	上岩洞
			城山洞中 山1—山8
			山26山32山40—山53
			山79山75山99山440
			44—42의2 120
			122—124 126—132
			144—152 162—167
			174—175 180—182 199의1
			北加佐洞中 山12—山13
			山15山27 山29

加佐派出所	南加佐洞 291 의 2	南加佐洞 中洞 城山洞中 山1—山8 山26 山32 山79 山40—山53山75山99 440 44 42의 2 120 122—124—126 132—144—152 161—167 174—175 180—182 199의 1 北加佐洞 山12—山13 山15 山27 山29 山31의 1 山31의 7 山46 山10·4 8—166 168의 8 170·172 174—175 180 185의 1 186의 15 186의 17 200 205 234 250 254 275	山31의 1 山31의 7 山46 山101 4 8—166 168—8 170—172 174—175 186의 15 185의 1 180—186의 17 200 225—234—250 254—275 南加佐洞	
東大門派出所	鍾路6街72—4	鍾路 6街 鍾路 5街 1—8	鍾路 6街	

東 大 門	鍾路五街派出所	鍾路 5街 136	241-284 404-494 鍾路 4 街中 122-128 鍾路 5街中 9-240 285-403 495-521 禮智洞中 1-31 (除 27의 2 29) 186-304(除 193의 1)	鍾路 4街中 122-128 鍾路 5街 禮智洞 1-31 (除 27의 2 29) 186-304(除 193의 1)
	昌清派出所	昌信洞 410	昌信洞中 310-528 (除 394-401 402北側) 430西側)	昌信洞中 137-304 (除 138 比側) 314-528(除 394-401) 530-581 582南側 587 651-701(除 656 660)
	昌信派出所	崇仁洞 53	昌信洞中 1-130 205-304(除 226西側) 山1山4山6東側山7山8 崇仁洞 1-64 65北側 69-179 山1 山5 山56	昌信洞中 1-130 山1山4山6東側 山7山8 崇仁洞中 1-64 65北側 69-179 山1 山5 山56
	德山派出所	昌信洞 595-23	昌信洞中 131-204 530-701 山6 西 側 226 西 側	昌信洞中 131-134 135-138 北側 582 北側 583-650 656 660 山6 西側
	青坡洞派出所	青坡洞 2街12	青坡洞2街(除山1.1.2) 青坡洞 3街 (除 117.118의 56 132-135)	青坡洞2街(除山1.1.2) 青坡洞 3街 (除 117.118의 56 132-135)

		葛月洞 83-84 西界洞 青坡洞 1街 葛月洞 1-63의 33 70-82 南營洞 龍山洞 1街 葛月洞 69의 34-101 (除 70-84) 北漢江派出所 二村洞 237의 7 漢江路 3街中 (除40中 8統 10統 63 65中 71號-106號 232號-334號) 東部二材洞派 出 所 東部二材洞派 出 所 龍山洞 5街 19의 471 漢江路 3街 65中 71號-106號 232號-334號 二材洞(東部 296) 龍山洞 5街 (除 1.2. 3) 元曉路 1街 1派 出 所 元曉路 1街 25 元曉路 1街 文培洞 新契洞 元曉路 1街中 (除20號-33號 64號-65號) 元曉路 2街 元曉路 3街 1의 1 元曉路 2街1의 20號-33號 64號 65號 2-96 元曉路 3街 龍門洞 桃花派出所 桃花洞 9 桃花 1洞中 1-16 19-20 22-25	西界洞 青派洞 1街 葛月洞 1-69의 33 70-83 南營洞 龍山洞 1街 葛月洞 69의 34-101 (除 70-83) 漢江路 3街中 (除40中 8統 10統 41-61 63-65) 漢江路 3街 41-61. 65 二村洞(東部) 龍山洞 5街(除 1.2.3) 元曉路 1街 文培洞 新契洞 元曉路 2街 元曉路 3街 龍門洞 桃花洞中 1-23 412
--	--	--	---

			27-30 32 33-35
			347-356 358-371
			373 376-386
			388-389 401-412
			山1-山7
麻浦派出所	麻浦洞 9	桃花 2洞中	桃花洞中
		17-18	23-531
		21-24 26-31	山7-山9
		33-34 36-346	麻浦洞
		337. 399-400	
		413-531	
		麻浦洞	

2. 名稱變更

管轄署	名稱	
	新	舊
西大門警察署	鍾路 6街 派出所	東大門派出所
〃	明倫洞派出所	明春 々
〃	惠化洞 々	東小門 々
永登浦警察署	堂中 々	南楊 々
〃	新林 々	奉得 々
清涼里警察署	清涼里 々	驛前 々
〃	驛前 々	清涼里 々

附 則

이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指定 自動車敎習所 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 1966年 11月 21日

서울特別市長 김현우

◎서울特別市規則第610號

서울特別市 指定 自動車敎習所 規則

第1條 (目的) 이規則은 道路交通法 施行令第48條에 依據 指定하는 自動車 教習所의 教習基準을 一元化하여 同一水準의 教習過程에 따라 優秀한 運轉者를 養成함에 있다

第2條 (適用) 指定 自動車教習所(以下 教習所라한다)는 道路交通法 施行令 第48條에 定한 事項과 이規則에 定한바에 依하여 教習을 實施하여야 한다

第3條 (教習區分) ① 教習은 本科와 速成科로 區分實施할 수 있으며 이 課程을 累積한者는 普通第2種免許試驗에 있어 道路交通法 第59條 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하여 試験의 一部를 免除한다

② 速成科의 入學資格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이어야 한다

1. 軍에서 運轉에 從事한 者로서 그事實을 認定할 수 있는 證明書를 所持한者

2. 過去에 普通第 1.2種 免許를 所持하였다가 取消된者 (서울特別市長 釜山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의 確認證 添付)

3. 自動車助手로 2年以上 從事한 者로서 所屬會社의 代表者가 認定하는者 (關係 證明書 添付)

4. 其他 運轉經驗이 있다고 教習所長이 認定하는 者(證明할수있는 書類가 具備되어 있어야함)

第4條 (教習生募集) ① 教習生의 入學은 本科는 年3回 速成科는 年6回로入學期日前에 公募하여야 하며 隨時로 公募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教習生募集은 運轉技能敎習에 있어 本科는 每日 個人當 32分 速成科는 每日 個人當 16분을 敎習할수있는 車輛을 確保한 範圍內에서 募集하여야 한다

第5條 (敎習期間) ① 敎習期間은 本科 16週 速成科는 8週로한다

② 1週를 通常 6日로하고 1日은 7時間授業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土曜日은 3時間 授業하되 交通道德에 關한 敎養 1時間 을 包含하여야 한다

③ 個人別 運轉技能敎習을 為하여 實情에 따라 敎習期間을 延長할수 있다

第6條 敎習科目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法 令

1. 道路交通法 및 同法施行令
2. 自動車運輸事業法 및 同法施行令
3. 道路運送車輛法 및 同法施行令

② 構造 및 取扱方法

1. 構造知識
2. 點檢要領
3. 故障排除 및 輕整備
4. 運轉裝置의 取扱方法

③ 運轉技能

1. 運轉裝置의 操作能力
2.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方法
3. 運轉中의 知覺 및 判断方法

④ 交通道德에 關한 教養

1. 人命의 尊嚴性
2. 交通과 事故趨勢
3. 交通條件의 不備
4. 運轉者의 責任

第7條 (敎習科目別 配定時間) ① 敎習區分에 따른 科目別 配定時間은 別表 1에 依한다

② 別表1에 配定된 時間中 運轉技能敎習에 있어서는 每日 欄人별로 本科는 32分 連成科는 16분을 實際 運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科目別 敎習에 있어서 被敎習者の 能力を 考慮하여 科目別 內容의 配定된 時間의 範圍內에서 調整할 수 있다

④ 運轉技能敎習에 있어 被敎習者の 技能習得程度에 따라 配定時間外의 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⑤ 被敎習者が 本配定時間에 依한 科目別 配定時間의 10%以上 缺講하였을 案遇에는 畢業試驗에 應할 수 없다

第8條 (敎習카드 및 出席簿) 本敎習所에서는 別表2의 敎習카드와 別表3의 出席簿를 備置하여 敎習動態를 把握하여야 한다

第9條 (敎習監督) ① 서울特別市長은 擔當公務員으로 하여금 道路交通法施行令 第48條 및 本規則에 依한 實施與否를 確認케 할수있고 敎習에 必要한 指示를 할수있다

② 敎習所長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限 前項의 指示를 遵守하여야 한다

第10條 (敎習教材) ① 敎習所長은 敎習에 必要한 다음의 教材를 充分히 確保하여야 한다

1. 敎習에 必要한 掛圖 圖表 教科書 視聽覺教材
 2. 自動車 構造 및 取扱方法 敎習에 必要한 車輛 附屬品 模型 教材
 3. 運轉技能敎習에 必要한 車臺 可動車輛
 4. 其他 敎習에 必要한 教材 및 機材
- ② 運轉技能敎習에 使用되는 車輛은 道路運送車輛法에 依하여 登錄된 車輛이어야 한다

第11條 (敎習生 卒業試驗) ① 敎習生에 對한 卒業試驗은 構造 및 取扱方法 은 道路交通法施行令 第10條에 準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② 敎習所에서 實施하는 卒業者에 對한 運轉技能에 關한 卒業試驗은 敎習所에서 實施하되 市에서 實施하는 運轉免許試驗方法에 依하고 반드시 市免許擔當 幹部立會下에 實施한다

第12條 (敎習成績表 備置) 敎習所 卒業者の 卒業試驗成績表를 科別 個人別로 作成하여 一部는 敎習所에 備置하고 一部는 서울特別市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3條 (卒業證書交付) ① 卒業試驗實施結果 科目別60點以上(100點滿點)取得한 者에 限하여 卒業證書를 交付한다

② 卒業證書 交付��에는 交付臺帳에 依하여 一連番號를 賦與하여야 한다
(交付臺帳 備考欄에 敎習期別 科別을 表示)

第14條 (卒業者登錄) ① 敎習所長은 每期別 卒業者の 登錄을 서울特別市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 ② 서울特別市長은 教習所長으로부터 卒業生登錄申請이 있을 때에는 卒業試驗成績表와 異常有無를 對照한後 卒業證書 裏面에 別表4와 같이 登錄番號를 賦與하고 官印을捺印한다
- ③ 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番號를 賦與받지 못한 者는 運轉免許試驗에 있어 試驗一部를 免院받지 못한다

第15條 (指定의 取消) 道路交通法 施行令 第48條 및 規則에 定한 事項을 履行치 않을 때에는 서울特別市長은 그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이 規則公布以前에 指定한 教習所는 이 規則에 依하여 指定한 것으로 본다

別表 1.

敎習區分에 따른 敎習科目別 配定時間

단위시간

科 目	內 容	敎習區分		備 考
		普通科	速成科	
		16週	8週	
法 令 (20%)	1. 道路交通法 및 同法施行令	54	26	
	2. 自動車運輸事業法 및 同法施行令	26	13	
	3. 道路運送車輛 및 同法施行令	26	13	
	小計	106	52	
構造및取 扱方法 (30%)	1. 構造知識	40	20	
	2. 點檢要領	39	20	
	3. 故障排除 및 輕整備	40	20	
	4. 運轉裝備의 取扱方法	39	20	
	小計	158	80	
運轉技能 (50%)	1. 運轉裝置의 操作能力	88	44	
	2. 交通法規에 따라 運轉하는 方法	88	44	
	3. 運轉中의 知覺 및 判斷方法	88	44	
	小計	264	132	
交通道德 에 關한 敎養	1. 人命의 尊嚴性	4	2	
	2. 交通上 事故趨勢	4	2	
	3. 交通條件의 不備	4	2	
	4. 運轉者의 責任	4	2	
	小計	16	8	
	總 計	544	272	

別表 2

교습생 카드

교습구분

사 진 력	본적							
	이 주소							
	직업	학 력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입교년월일	19 년 월 일	수료년월일	19 년 월 일	수료 증서	No			
입 학 적	안과	시력	우 좌	색 신	안질환	기		
기 록 성	이비과	청력	우 좌	이 1회		타		
4 지운동	강지	우 좌	하지	좌				
출 입 시 험	법 령		구 조 및 취 급		기 능	고 통 도 턱		
	일자	점수	달	일	일자	점수	달	일
	일자	점수	달	일	일자	점수	달	일
비 고	※ 입교전 출전경력(속성과 생에 한함)							

교습이력

과목	교습일 기록 및 담임직원날인	담임지도원기록란
법 령 학	
구 조 취 급 학	
운 전 기 능	코 - 스 교습 장 거 리 교 습	
교 통 도 리	

別表 3

출석부

일련 번호	성명	과별	기별	1	2	3	4	5	6	7	8	9	10	11
예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別表 4

(출업증명서 교부시 등록요령)

表 面

裏 面

No _____	지정자동차 교습소 수료자	
출업증서	등록필	등록번호
○ ○ ○		(No.)

19 ○ ○ ○		
서울특별市	長	
OOOOOOOOOO	□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懲戒量定에 關한 規則中 改正規則을 이에 公布한다

서기 1966年 11月 24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規則第611號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懲戒量定에 關한 規則中

改正規則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懲戒量定에 關한 規則中 다음과같이 改正한다

第2條中 懲戒의 議決要求 및 議決의 基準을 別表와 같이 한다

第3條의 第1號乃至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第4號를 新設한다

1. 謴責處分2회를 받은者が 다시 謴責處分을 받을 行爲가 있을 때에는 減俸
2. 減俸處分을 받은者が 다시 謴責處分을 받을 行爲가 있을 때에도 減俸
3. 減俸處分을 받은者が 다시 減俸處分을 行爲가 있을 때에는 龍免
4. 謴責과 減俸處分을 받은者が 다시 謴責이나 減俸處分을 받을 行爲가 있을 때에도 龍免

第4條의 第1號乃至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謴責의 競合(3個項目以上)은 減俸
2. 謴責과 減俸의 競合은 減俸
3. 減俸과 減俸의 競合은 龍免

第45條中 “懲戒對象者”를 “懲戒嫌疑者”로하고 “功績事項” 다음에 “改진의 借”을 握入한다

別 表

懲戒量定에 關한 基準

懲 戒 事 由	懲 戒 基 準			備考
	罷 免	減 俸	謹 責	
1. 職務怠慢				
가. 無屈欠勤	繼續15日以上	繼續 7日以上	續3日以上	
나. 出勤時間遲參 및 無斯早退			〃 3回以上	
다. 當直不履行		故 意	過 失	
라. 民願書類 및 期限文書의 處理遲延	故意30日以上	故意10日以上	過失15日以上	
		過失30日以上		
마. 政府財產(金品)의 亡失毀損	故 意	故 意	過 失	
바. 職務遺棄	〃	〃	〃	
2. 品位損傷				
가. 訓欺, 窃盜, 強盜, 強姦	1回			
나. 도 바		1回		
다. 著 妻				
라. 飲酒斗慾	事實上同居			1回

마. 遊興場出入(禁止區域)						
바. 暴行, 奇酷行爲						
사. 權利營利行爲 및 兼職行爲						
아. 機密漏洩						
자. 其他品位損傷						
3. 業務上橫領 및 背任						
가. 公金(品) 橫領						
나. 公課金의 不正賦課 및 減免						
다. 違約金의 未徵收 및 其他損失 招來						
라. 違法不當契約生는證書發行						
마. 公金流用						
바. 其他會計上의 不正						
4. 賄 收 賄						
가. 事前收賄						
나. 事後收賄						
다. 金品傳達						
5. 文書에 關한 違法 및 不當行爲						
가. 公文書偽造變造同行使 및 破壞						
나. 虛偽報告書作成 및 同行使						
다. 公正證書原本의 不實記載						
라. 官印의 不正使用						
6. 職權濫用						
가. 職權分 權限行使至 他人의 權利侵害 및 權利行使妨害						
나. 職名詐稱						
다. 官用車濫用						
7. 行政運營上의 違法 및 不當行爲						
가. 行政秩序의 紋亂						
나. 法令, 訓令, 規則違反						
다. 職務上命令違反						
	故	意	過	失		情狀 에 따 라 用
	多寡不問					
	故	意	過	失		減 以上 適用
	多寡不問					
	故	意	過	失		
	1回					
	故	意	過	失		減 以上 適用
	故	意	過	失		情狀 에 따 라 減 以上 適用
	1回					
	故	意	過	失		
	故	意	過	失		
	故	意	過	失		
	故	意	過	失		

라. 政治運動 및 労組活動 (集団行爲)				情狀에 依據以 上察 用
마. 其他重大社 亂誤	故 意	故 意	過 失	

附 則

이規則은 서기 1966年 12月 1일부터 施行한다

훈령

◎서울特別市訓令第224號

公 報 室 長

서울特別市市民會館長

서울特別市市民會館委任專決規程을 다음과 같이 定한다

서기 1966年 11月 14日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서울特別市市民會館委任專決規程

第1條 (專決權) 各課長은 그所管事務에 關하여 이 規程에 依하여 專決한다

◆ 다만 專決事項이라도 重要 또는 異例에 屬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것은 館長의 決裁를 받아야 한다

第2條 (協助) 專決事項으로써 他課에 關聯이 있는 것은 合議하여야 하며 그 意見이 相異한 때에는 館長의 決裁를 받아야 한다

第3條 (輕易事項의 處理) 各 課長은 그 專決事項에 比하여 輕易한 事項을 專決한다

第4條 (共通된 專決權) 各 課長은 다음事項을 專決한다

1. 所屬公務員의 事務分掌
2. 所屬公務員의 出張 및 時間外勤務命令
3. 所屬公務員의 早退 및 外出許可

(36) 命

4. 輕易한 사항의 通知 督促 및 照覆

5. 日誌의 處理

6. 刊行物의 配付

第5條 (庶務課長) 庶務課長은 다음 사항을 專決한다

1. 當直命令에 關한 事項

2. 4級以下 地方公務員의 服務에 關한 諸申告處理

3. 所屬公務員의 在職 및 退職證明

4. 所屬公務員의 身元 및 前歷證明

5. 所屬公務員의 年金關係確認

6. 寄與金拂込內擇提出

7. 所屬公務員年金카一三送付 및 依賴

8. 歲入調整通報

9. 幕間放送

第6條 (經理課長)【經理課長은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1. 物品出納命令

2. 會館의 運行許可

3. 車輛運行許可

4. 電話交換業務

5. 賣票業務

6. 座席區分申請

7. 非課稅申告

8. 會館設備使用實績日報

第7條 (技術課長) 技術課長은 다음 事項을 專決한다

1. 附屬設備使用許可 및 使用料調定

2. 電氣 및 水道使用料確認

3. 冷暖房使用料調定

4. 輕易한 施設管理

附 則

이 規程은 서기 1966年 11月 21일부터 施行한다

사령

◎서기 1966년 11월 1일

최영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지경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강두길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보전기원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최동숙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재경서기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박장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38) 자 령

1호봉을 급함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박 원 벤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재정주사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

김 종 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보광동수원지 공사사무소 근무를 명함

안 영 철

조건부지방건축기원보에 임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조 돈 호

조건부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도시계획국계획과 근무를 명함

조 종 필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도시계획국계획과 근무를 명함

주택과 지방행정주사 김 완 규

도시계획국 주택과 상가주택

계장직무대리를 명함

특도수원지사무소 지방기재기원 안 성 식

서울운동장 근무를 명함

김 구 만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행정과 근무를 명함

농경과 지방수의사 이 하 충

제1도장 근무를 명함

제1도장 지방수의사 김 장 인

농정과 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지방수의사보 이 세 용

농정과 근무를 명함

농경과 지방수의사보 최 원 석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서 영 원

기획관보좌를 명함

영등포병원 지방행정주사보 김 두 실

법무관보좌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하 진

기획관보좌를 명함

공도·원교육원 행정주사보 조 채 호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보 권 넝 우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기획관보좌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고 성 남

용산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축산기사보 최 연 희

성동구농정파견산업국농정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주 한 수

종로구 근무를 명함

청소제1과 행정서기판 한 종 설

(40) 사명

청소국 청소제 1과장 겸 청소제 2과장 직무 대리를 명함

보육병원 지방행정서기보 병 화 강

부산시 진출을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서기보 전 종 오

부여군 진출을 명함

성북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박 학 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주택과 지방건축기사 임 병 태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성동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 김 창 숙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서기 1966년 11월 3일

영등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 주 응 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전직에 처함

◎ 서기 1966년 11월 4일

공업과 지방행정주사보 민 병 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마포구 지방건축기사보 심 두 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6.8.25자(발령 제353호) 징계처분(전직)을 동일자로 취소함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최 석 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6.8.25자(발령 제

53호) 징계처분(파면)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감봉 6월에 처함

논산구 근무를 명함

◎ 서기 196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행정서기관 강 정 회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1호규정에 의하여 감봉3월에 처함

◎ 서기 1966년 11월 15일

이홍애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사세서기 보에 임함

호봉을 급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김봉한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재정주사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경제~~ 관보.좌를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최진영

복직을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영숙

복직을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김종식

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1호~~호봉을 급함

계획과 근무를 명함

김남훈

조선부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구학정리과 근무를 명함

이기설

조선부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산업국특지과 근무를 명함

홍태원

조선부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48) 사령

수도국수원과 근무를 명함

황	인	정
배	부	도

조건 부지 방토목기원보에 임함

건설국하수파 근무를 명함

지	명	전
---	---	---

조건 부지 방토목기원보에 임함

수도국급수파 근무를 명함

김	성	경
---	---	---

조건 부지 방토목기원보에 임함

용선구 근무를 명함

염	간	옹
---	---	---

조건 부지 방토목기원보에 임함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박	두	규
---	---	---

조건 부지 방토목기원보에 임함

제관사업소 근무를 명함

윤	웅	현
---	---	---

조건 부지 방토목기원보에 임함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권	오	영
---	---	---

조건 부지 방토목기원보에 임함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변	정	언
---	---	---

조건 부지 방토목기원보에 임함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박	종	오
---	---	---

조건 부지 방토목기원보에 임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이	병	열
홍	영	기

조선부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수도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이	홍	식
---	---	---

조선부지방토목기원보에 임함

구의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김	용	태
---	---	---

조선부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박	웅	내
---	---	---

조선부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정	거	호
---	---	---

조선부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

임	러	자
---	---	---

조선부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영등포병원 근무를 명함

정	병	호
권	화	자

조선부지방약무기원보에 임함

남부병원 근무를 명함

윤	환	운
---	---	---

조선부지방임업기원보에 임함

사방관리소 근무를 명함

조선부지방간호기원보 장 화 자

(44) 사례

서대문병원 조건부지방간호기원보 최 영동포구수도사업소 조건부지방재경서기보 정 본인의 불출두로 인하여 서기 1966년 10월 1일자 신규 임명 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발령 제415호)	행 순 지 영
서대문구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김 본인의 임용포기서 제출로 인하여 서기 1966년 11월 1일자 신규임명 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함(발령 제470호)	영 민
◎서기 1966년 11월 17일 감사관보좌 지방행정주사 공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1호 규정에 의하여 흥직을 명함	상 무
◎서기 1966년 11월 19일 영동포구 지방행정서기보 문 원호처전출을 명함 종로구수도사업소 지방토목기원 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비서관에 임함 (지방3급을류상당)	홍 도 경 식 옥 일 성
4호봉을 급함 시장실 근무를 명함 비서관에 임함 (지방3급을류상당)	문 쾌 식
4호봉을 급함 시장실 근무를 명함 성북구건설과장 토목기좌 차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규정에 의하여 감봉1월에 처함 ◎서기 1966년 11월 20일	준 문 오 세 하
서울특별시전입을 명함 농촌지도사보에 임함	

6호봉을금함

농촌지도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한 친 원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서기 김 주 일

판광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최 재 흥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박 창 배

시민회관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훤 현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박 지 명

도시계획국서무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안 회 옥

보건사회국부녀과 근무를 명함

보육병원 지방행정서기 고 진 구

삼성직업보도원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서기 이 재 은

보육병원 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보 이 호 여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국서무과 지방행정서기보 우 창 치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조 동 석

성동구 근무를 명함

아동보호소 지방행정서기 임 금 춘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서기보 서 총 연

영동포구 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국서무과 지방체경서기 민 윤 식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임업기원보 임 재 회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영동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유 영 자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김 형 탁

영동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 지방간호기원보 이 순 혜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박 명 규

종로구 근무를 명함

보광동수원지공사사무소 지방토목기사 배 회 완

보광동수원지공사사무소겸급수과 근무 단경무처 근무를 명함

계획과 지방토목기사 김 필 교

복직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사세서기보 김 능 의

마포구겸중구단경무처 근무를 명함

시민회관 지방행정서기 문 계 태

도시계획국 서무과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이 강 언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상 순

동대문구겸공무원교육원 단경무처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겸공보실 지방행정서기보 전 애 회

본직을 면하고 겸직에 전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증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원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증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구
사회파 근무를 명함	의약파 지방행정주사보 김	군
의약파 근무를 명함	동부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	태
수도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보 김	동
산업국녹지파 근무를 명함	양묘장 지방임업기사보 전	체
성북구경기획관보좌 단경무처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윤	성
동부병원경남부병원 단경무처 근무를 명함	동부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윤	석
제무국관제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고	연
내무국총무파 근무를 명함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	봉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성동구 지방재경주사 이	록
성동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재경주사 이	석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성동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 허	범
양동도구 근무를 명함	지방재정주사에 임함	숙

(48) 사령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유 대 선

지방재정주사에 임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이 경 호

행정주사에 임함

공무원 교육원 근무를 명함

녹지과 지방임업기사 홍 춘 맹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녹지과 근무를 명함

체관사업소 지방토목기원 한 상 영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서기 신 두 봉

지방사제서기에 임함

중구 근무를 명함

주택과 지방토목기원 정 재 탁

지방기계기원에 임함

관리과 근무를 명함

서부병원 지방보건기원보 원 교 훈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총무과 조무보조수 한 성 구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종로구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정 문 수

조건부지방재정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서기보 국 운 호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경리과 근무를 명함

중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용 경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사세서기보 이 상 두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사세서기보 권 재 현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성 훈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서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사세서기보 경 신 화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신 석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성동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박 승 기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라 기 오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규 흠

(50) 사명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옹암동주민관리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천 일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시민회관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우 재 철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종 성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 지방행정서기보 김 판 태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최 선 웅

조건부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우 종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중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시민회관 지방재경서기보 조 용 탁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종로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방 명 근

지방재경서기보에 임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중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박 상 철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국계획과 지방토목기원 이	강	수
도시계획국주택과 근무를 명함		
동부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	경	환
복직을 명함		
노량진수원지사무소 지방전기수 안	유	선
왕십리펌프장사무소 근무를 명함		
왕십리펌프장사무소 지방전기수 송	재	선
노량진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11월 30일		
운수행정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완	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관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종	현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영등포병원 지방간호기사보 김	정	사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11월 1일		
성북구 조전부지방전축기원보 안	영	철
건설파견 호적병무과 단 겸무처 근무를 명함		
조전부지방행정서기보 李	德	求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성북제2동 근무를 명함		
조전부지방행정서기보 朴	在	吉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삼선제1동 근무를 명함		
조전부지방행정서기보 金	秀	吉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52) 사례

7호봉을 급함

정화동 근무를 명함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宋 泰 仁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송천동 근무를 명함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姜 東 煥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월곡동 근무를 명함

◎서기 1966년 11월 16일

삼양체1동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신 명 규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11월 24일

성북구동소문동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柳 男 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지방간호기원 박 찬 수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11월 1일

마포구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禹 鐘 樂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서기 1966년 11월 5일

마포구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劉 永 緣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마포구공덕제1동 근무를 명함

마포구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宋 機 懿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7호봉을 급함

호적병무과 군무를 명함

◎서기 1966년 11월 7일

신공덕제2동 지방조무보조수 윤 철 용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11월 15일

조건부지방행정서기보 李 玖 鑄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6호봉을 급함

마포구 공덕제2동 군무를 명함

◎서기 1966년 11월 21일

도화제1동 지방행정주사 金 容 德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용산구 경수과지방사세서기보 金 成 守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기 1966년 11월 24일

마포구 호적병무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영 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087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정수조례의 경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
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공로선 : 혼처동~홍제동간

(54) 고 시

2. 공사의 종류 : 도로신설공사
3. 착공년월일 : 1966년 3월 16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12월 31일
5. 총공사비 : 68,938,369
6. 부담금총액 : 10,340,755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해구역 일원
8. 기타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88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 공사시공로선 : 홍제동~녹번동간
2. 공사의 종류 : 도로신설공사
3. 착공년월일 : 1966년 5월 16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10월 30일
5. 총공사비 : 164,182,340
6. 부담금총액 : 24,627,351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해구역 일원
8. 기타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89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정수조례의 정한는 바에 따라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 공사시공로선 : 녹번동~갈현동간
2. 공사의 종류 : 도로신설공사
3. 착공년월일 : 1966년 5월 30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11월 30일
5. 총공사비 : 201,955,748
6. 부담금총액 : 30,293,362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해구역 일원

8. 기타 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90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정수조례의 정하는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사시 공로선 : 영천~내장동간
2. 공사의 종류 : 가로 축조공사
3. 착공 년 월 일 : 1966년 5월 16일
4. 준공 년 월 일 : 1966년 12월 31일
5. 총 공사비 : 69,842,991
6. 부담금 총액 : 10,476,448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해구역 일원
8. 기타 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91호

신설가압펌프장의 명칭 및 위치고시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장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함

서기 196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명 칭 위 치 비 고

봉천동펌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상도동 120
삼양동펌프장	〃 성북구 삼양동 108
삼선동펌프장	〃 〃 삼선동 3가 90
인수동펌프장	〃 〃 미아동 624
정릉동펌프장	〃 〃 강릉 2동 161-1
정화동펌프장	〃 〃 동소문동 7가 118
필동펌프장	〃 중구 필동 2가 124-5
동승동펌프장	〃 종로구 동승동 31
홍은동펌프장	〃 서대문구 홍은동 71-777
성용네펌프장	〃 마포구 공덕동 1동 451-1

19402

2395

효창동펌프장 ◉ 용산구 효창동 산 9-3
 도원동펌프장 ◉ ◉ 도원동 1-55

◎서울특별시고시제1092호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정지를 해제 고시한다

시기 196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 해제지

임야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면적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주	소	성명
성북	정릉	87-46	임야	정	정	정		0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규남
								구	혜화동	5-41

2. 해제사유

본임지는 1957년도에 사방지로 지정하고 1956—1960년도에 사방시공한 지내로서 지정의 목적 달성을 해제함

서울特別市告示第1093號

서울特別市街路名制定

우리 서울은 500餘年間 民族의 首都로서 地理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生活의 中心地로 자라나왔을 豐滿 아니라 最近 數年間 世界有數의 大都市로서 눈부신 發展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서울이 그 동안은 大部分의 街路에 이름을 갖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이에 서울特別市는 市民生活의 不便을 떨어 드리고 國際都市로 서의 面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름이 없는 主要街路에 歷史的 文化的 傳統的인 것과 現代的인 生活感覺을 尊重하고 市民 여러분의 意思를 널리 받아드려 다음과 같이 서울特別市 街路名을 制定하여 이에 告示합니다

서기 1966년 11월 26일

서울特別市長 附 道 路

區 分	始 發 點 地 番	終 點 地 番	街路名
阿峴洞로타리~麻浦區界	麻浦區阿峴洞10	麻浦區義浦洞419	麻浦路
大韓航空社~金浦空港	西大門區西小門洞21	水登洞~傍花洞621	空港路
서울驛~西大門로타리經由~葛峴洞	中區東子洞43의1	西大門區葛峴洞1	葛峴路
中林洞~元曉路1街	西大門區中林洞9	龍山區青坡洞3街2	青坡路
東亞日報社 앞~清溪川6街	中區太平路1街31	中區乙支路6街18	清溪路
市廳앞~商業銀行앞	中區太平路1街31	中區南大門路2街111 의1	小公路
中學洞(中央廳前)~蓮建洞(獸醫大)	鍾路區中學洞68	鍾路區蓮建洞128	栗谷路
東國大入口~昌慶苑經由~惠化洞로타리	中區忠武路5街55의2	鍾路區惠化洞132	昌慶路
惠化洞로타리~水踰里	鍾路區惠化洞90	城北區水踰洞61	編阿路
忠武路2街~中央劇場經由~安國洞로타리	中區忠武路5街53의8	鍾路區承志洞7	仁川路
南學洞(日新國民校)~嘉會洞	中區南學洞1	鍾路區嘉會洞1	水踰路
筆洞1街~教化門	中區筆洞2街82의1	鍾路區臥龍洞5	教化路
大韓劇場社~宗廟(東側)	中區忠武路4街125	鍾路區華芳洞93	鍾策東路
〃 (西側)	〃	〃 85	〃 西路
雙林洞惠~化洞로타리	中區雙林洞106	鍾路區惠化洞132	大智路
明洞入口~中央劇場前	中區南大門路2街14 의1	中區明洞街39	明洞路
中央劇場前~水口門經由~新堂洞	中區亭洞1街39	城東區新堂洞233~12	眞興路
시 을 운동場앞~藥水洞로타리	中區乙支路2街1	城東區新堂洞574~12	獎忠路
乙支路7街~往十里(杏堂洞)로타리	城東區新堂洞228	城東區杏堂洞196	往十路
三角洞~漢南洞經由~藥水洞로타리	龍山區漢江路1街23	城東區新堂洞574~12	漢江路
藥水洞로타리~昌信洞	城東區新堂洞374~12	東大門區昌信洞327	茶山路
往十里(杏堂洞)로타리~千戶洞	城東區杏堂洞196	城東區千戶洞421의6	廣壯路
培明中學(往年里)~新設洞經由~教岩橋	城東區新堂洞7	城北區東小門洞5街1	漢溪路
東大門~清涼里로타리	東大門區昌信洞700	東大門區清涼里洞176	昌山路
大光中學(新設洞)~高大앞	東大門區新設洞58	城北區安岩洞1	安岩路

서울驛~第1漢江橋	中區東子洞43의1	龍山區漢江路3街65	漢江路
往十里로타리~馬場橋·洪陵經由~[기사]	城東區杏堂洞196	城北區비아동24	古山路
和信암~安國洞로타리	鍾路區新路2街1	鍾路區堅志洞7	安國路
中央廳東側~三清洞	鍾路區司隸洞126	△ 三清洞1	三清△
南山入口(放送局)~市警 앞經山~漢南洞	中區篆字洞4의4	龍山區漢南洞山10	素月路
三角地~龍山署앞	龍山區漢江路1街100	龍山區元曉路1街133	龍山路
中央廳~孝子洞	鍾路區世宗路1	鍾路區孝子洞139	孝子路
第1漢江橋~銅雀洞	永登浦區本洞9	永登浦區銅雀洞202	銅雀路
第1漢江橋~永登浦區廳	永登浦區本洞9	永登浦區永登浦洞 2 街139	六臣路
永登浦區廳~梧柳洞	△ 永登浦洞1街109	△ 始興洞678	京仁路
大方洞~新大方洞	△ 大方洞121	△ 新大方洞683	郡贊路
永登浦區廳~始興	△ 永登浦洞1街97	△ 溫水洞山17의29	始興路

◎서울특별시고시제1094호

상공부령 제199호 및 제175호에 의한 석유류 판매규칙 개정에 따른 당시 고시 제941호를 판하 주유소 및 부판매인의 자격요건과 석유류 배정판매에 관한 사항등 동규칙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함

서기 1966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 (자격요건)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하는자 및 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자는 다음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할 때
 - 자본금(자연인인 경우에는 자산액)이 15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 소방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21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저장 설치허가를 받고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그 용량은 4키로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 주입기는 2대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당시 지정한 별표 제1도면과 같은 주유소 승인번호 표시판을 주유

소 건물 중앙에 첨부하여야 한다

- 5) 종업원 복장은 여자 종업원은 청색 상의(동계는 흑감색), 남자 종업원은 흑감색 단식 긴작업복과 원형 작업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 6) 방화벽은 지상 1미터까지는 저색 그 상반부는 배색으로 도장하고 별표 제2도면과 같이 “불조심” “금연”이라고 상반부에 저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7) 주유소 환경을 미화할 수 있는 조명등 1개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8) 방화시설은 관찰 소방서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9) 주유소의 건물내외의 바닥 진부를 아스팔트, 시멘트 또는 벽돌로 포장하여야 한다
- 10) 화장실은 주유소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내번 및 소변기를 분리 설치하고 타일을 부착하는 등 경결을 기하어야 한다
- 11) 샤워 또는 세면시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2) 접객용 의자 및 장의자를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13) 등유를 취급코자 할 때에는 밀도 소방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소방관서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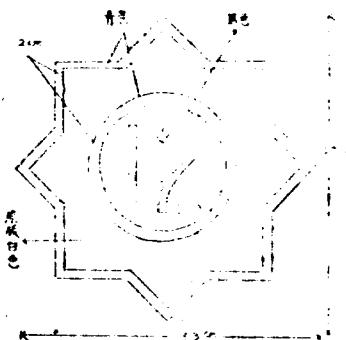
나. 부판매인이 되고자 할 때

- 1) 자산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2) 소방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22조에 의한 구조시설을 동령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고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 3) 도로에서 명료히 보이도록 별표 제2도면과 같은 석유류부판매소라고 쓴 표시판을 첨부하여야 한다
 - 4) 미터법에 의한 판매용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소방관서에서 지시한 소방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배경) 석유류 배정은 다음에 의한다
- 가. (배경순위) 휘발유는 운수용, 일반용, 공업용 순으로 배정한다
- 1) 운수용은 영업용, 관용, 자가용 순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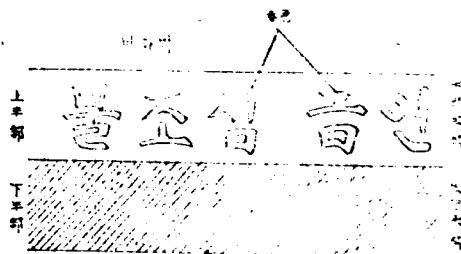
(60) 고 시

- 2) 일반용은 관공서, 외국기관, 공공단체 순으로 한다
- 3) 경유, 중유, 솔벤유는 주유소별 실수요자별로 표시된 시판매인의 신청에 의하여 배정하되 전항의 순에 의하여 배정한다
나. (배정신청) 수매대상자 및 시판매인은 익월분 소요량을 매월분 소요량을 매월 15일까지 별표 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되 시판매인의 경우에는 수요처별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타) 석유류 판매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 가. (시설검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주유소 시설과 유질 및 량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나. (승인사항의 변경) 석유류 판매규칙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으로 지정된자가 승인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판매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판매인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판매 및 판매보고) 석유류 판매 및 판매보고는 다음에 의한다
 - 1) 석유류 판매 중 휘발유에 한하여 구입권(별표 제2호 서식) 및 주입권(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판매한다
가) 구입권에 의한 판매는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저장 시설을 가진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판매보고는 다음에 의한다
가) 석유류 중 휘발유에 한하여 시판매인과 주유소에서 매월 5일까지 전월분 판매상황을 별표 제5의1 및 5의 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승인의 취소) 석유류 부판매인과 주유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석유류 판매규칙 및 당시 고시를 위반하였거나 이에 따른 행정명령에 불응하였을 때
 - 2) 경당한 이유없이 1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
 - 3) 질이 불량하거나 량이 부정확할 때
 - 마. (지정의 취소)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시판매인은 그 지정을 지체없이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바. 이 고시는 196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第1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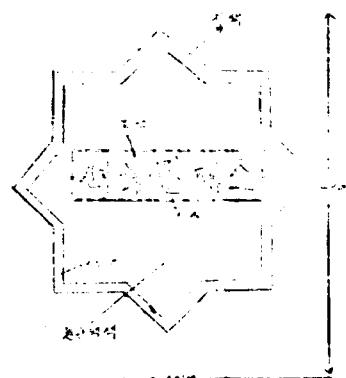


(第2圖面)



(제3도면)

등유판매계시도안



13408

(62) 고시

제1호 서식

년 월분 석유류 배급신청서
서기 19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귀하

하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배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석 유 종 류
2. 신 청 량 사정량
3. 시 설 개 요
4. 용 도
5. 사 용 기 간
6. 신청수량산출기초
7. 전 월 배급 수량
8. 헌품인수회장장소
9. 비 고 표는 기입 하지 말것

용지규격 26cm×18cm

제2호서식

(구입권)

월분 석유류 배정통지

수 요 자 지정회사

유 종 휘발유

수 량

유 효 기 간 당월말일한

용 도

수령자주소

상기와 같이 배정되었음

서기 196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제3호서식

제5의1호서식

월분 석유류 판매상황 보고서

귀하

월분(단위 :)

유종	취급량	이월량	입하량	누손량	판매량	잔량	취급량 미달라	비고
휘발유								
경유								
중유								
30								
3100								
윤활유								
쓸벤트								

석유류 판매상황 빌지 판매일람표 첨부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시기 1966년 월 일 일

사명

주 : 갑, 윤지로하여 갑지는 반형처의 부분으로 보관함

용지규격 26cm×18cm

5의2호서식

석유류 판매일람표

유종

시기 19 년 월 일
(단위 :)

구입권	수요처	배정량	판매량	잔량	판매일	비고
월일	번호					

13410

2399

(64) 품 고

주 : 잡지, 올자로 하여 잡지는 일행처의 부분으로 보관함
용지규격 26cm × 18cm

◎서울특별시고시제1095호

서울특별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총액을 다음과 같이 부과결정하고 이에 고시함

서기 1966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1. 공사시공로선 : 이문동~지내
2. 공사의 종류 : 도로신설공사
3. 착공년월일 : 1966년 9월 7일
4. 준공년월일 : 1966년 10월 31일
5. 총공사비 : 15,063,004
6. 부담금총액 : 2,259,450
7. 부과구역 : 별도 해당구청장이 지정하는 수해구역 일원
8. 기타사항 : 부과방법 일시부과

◎서울특별시고시제1096호

당시 등화유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서기 1966년 11월 30일부터 적용 실시한다

서기 1966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기

1. 등화유 판매가격 (주유소 빛 부판)

유종	포장	단위	판매가격	비고
등화유		1ℓ	12원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84호

시유건물(철거조건부)에 각입 신공고

서기 196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견 물 표 시 : 1) 서예문구 협지동 45—46 위치상목조 2층 연건평 123평
방미터
2) 동예문구 용두동 663목조와습 21평
2. 입 칠 일 시 : 서기 1966년 11월 10일 10시
3. 입 칠 장 소 : 당시 재무국관제과
4. 입 칠 방 법 : 일반경쟁입찰
5. 입 칠 등 록 : 서기 1966년 11월 9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세납세
필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6. 입 칠보증금 : 입찰금액의 1할이상 현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증수표를
납부한다
7. 철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계약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고
10일 이내에 완전철거하고 경지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약
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겠
음

◎서울특별시공고제185호

서기 1966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주소 또는 거소
2. 토지구획정리비 분담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압류 통지서
가. 공구 및 낸도별
 - (1) 서교토지 제1공구 1962년도분 20건
 - (2) ◊ 제2공구 1962년도분 8건
 - (3) ◊ 제3공구 65년도분 14건

상기 부동산 등기압류 통지서를 1966년 1월 28일~1966년 10월 17일자로 등
기우송 하였으나 일부 체납자의 주소, 거소 불명으로 직접 본인에게 전달이

(66) 공고

불능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일연 번호	고지서 번호	지목	물건지	납입액	납입의무자	
					주소	성명
1	C 340	田	麻浦區合井洞 208~21	34,000	麻浦區東橋洞 110~14	李起杓
2	D 102	垈	〃 250~1	16,439	鍾路區內資洞 5	鄭命壽
3	C 30	田	〃 236~28	87,150	鍾路3街	禹福順
4	C 342	垈	〃 199~8	50,575	大邱市達城洞	88
5	D 144	田	〃 253~2	26,316	麻浦區合井洞	13
6	〃 1工區 166	〃 垈	〃 西橋洞 253~2	8,515	麻浦區合井洞 253~3	黃再老
7	〃 76	垈	〃 東橋洞 13~6	6,690	麻浦西橋洞	金順玉
8	〃 127	〃	〃 10~20	4,834	鍾路區寬勤洞 33~6	柳英載
9	〃 98	田	〃 60~3	3,626	麻浦區東橋洞	李寬燮
10	〃 151	垈	〃 30~5	8,640	西大門區治川洞 60~30	張淳懸
11	〃 35	〃	〃 44~48	6,701	麻浦區東橋洞 111~15	洪鍾雨
12	〃 150	〃	麻浦西橋洞 35~15	3,007	〃	姜世元
13	〃 116	〃	麻浦東橋洞 44~47	9,384	〃	趙丁龍
14	〃 182	〃	〃 73~1	1,459	西橋洞20~10	金龍默
15	〃 168 2工區 225	〃	西橋洞 14~5	3,951	〃 西橋洞20~10	金東煥
16	〃 218	〃	〃 158~2	6,579	〃 14~5	金鍾根
17	〃 222 1工區 25	田	〃 169~3	18,208	〃 68	沈樞模
18	〃 93	垈	〃 169~1	10,850	〃 160	李完鉉
19	〃 62	垈	〃 8~11	13,593	〃	〃
20	〃 199~3	田	〃 東橋洞32	4,248	〃 8~11	田華秀
21	〃 62	垈	〃 西橋洞94~15	14,000	〃 東橋洞33	朝鮮化學 工業株式 會社
22	〃 30	垈	〃 合井洞283~30	15,470	〃 西橋洞94~15	姜仁淑
23	〃 135	垈	〃 東橋洞46~25	20,400	〃 合井洞282	金益培
24	〃 30	垈	〃 西橋洞35~15	775	〃 東橋洞46~22	張基哲
25	〃 135	垈	〃 西橋洞35~15	3,007	〃 85	趙丁龍

26	△ 125	夕	△ 東橋洞 64	3,673	夕	64-2	安義均
27	△ 221	田	△ 西橋洞 41-1	14,125	夕	阿峴洞 43	車王燮
28	C 155	夕	△ 合井洞 337-2	60,000	鍾路區新門路1街109		申義燮
29	△ 337	夕	△ 208-17	51,115	麻浦區西橋洞 47-4		全貞泰
30	2工區 55	埜	△ 西橋洞 94-24	14,620	夕	94-24	崔福惠
31	1工區 209	田	西大門區滻川洞 65-66	20,922	西大門區滻川洞 65-66		朴炳赫
32	△ 10	埜	△ 65-18	4,732	慶北大邱市大鳳洞 147-21		朴貞順
33	2工區 27	夕	麻浦區西橋洞 86-65	3,222	麻浦區西橋洞 86		河相範外 16
34	△ 13	夕	△ 86-38	13,999	夕	86	鄭熙羊外 19
35	△ 28	夕	△ 88-4	32,931	夕	86	
36	1工區 175	夕	△ 20-5	4,595	西大門區滻川洞 20-5		柳潤成
37	A 32	墳	△ 合井洞 150	60,000	麻浦區合井洞 212		白鳳順
38	D 261	埜	△ 西橋洞 303-18	6,419	中區光熙洞 1街 182-6		朴永善
39	△ 260	夕	△ 合井洞 285-23	6,755	夕	夕	
40	1工區 262	畜	△ 西橋洞 195-3	5,022	麻浦區營里洞 山2		徐南祚
41	C 310	埜	△ 望遠洞 191	472	△ 望遠洞 209		石甲成 石種根
42	△ 309	夕	△ 189	16,727	夕		
計 42 件					697,714원		

◎서울특별시공고제186호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진개 약 42,000대(1대당 4,5)

2. 입찰일시 66년 11월 19일 12시

3. 입찰방법 일반공개 경쟁입찰

4. 입찰장소 서울특별시 청소국 청소1파

5. 입찰자격

가. 배수 또는 투기 희망장소 및 소요면적

(1) 성동방면 약 8,800대분

(2) 성북 △ 약 5,100 △

- (3) 동대문 ◯ 약 11,400 ◯
- (4) 서대문 ◯ 약 4,100 ◯
- (5) 마포 ◯ 약 3'100 ◯
- (6) 영등포 ◯ 약 10,200 ◯

나. 장소거리

자해당 구청으로 부터 왕복거리 17.5이내

다. 조건

- (1) 토지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자
- (2) 매립 또는 진개처분장으로 적합한 토지
- (3) 낙찰후 서울특별시 오물청소규칙 제9조에의거 오물처분장 설치허가를 득할수 있는자 또는곳
- (4) 매립지 또는 처분장 까지 대행차량통행이 적합한 도로가 있거나
축조할수 있는자

6. 입찰등록

가. 구비서류

- (1) 시세국세 완납증명서
- (2) 토지 소유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자는 위임장(인부증감명첨)

나. 제출기일 66년 11월 14일 17시

다. 현장확인

5항의 조건을 현지 답사한후 적격자에 한하여 입찰케 한다

7. 입찰보증금

입찰금액 2할이상의 현금시중금융기관의 보증수표 또는 국채로 납부한다

8. 배각조건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만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입찰보증금은 시에 귀속한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시 청소1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1966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특별시공고제187호

시유건물(철거 조건부) 매각입찰공고

다음표시재산을 지방재정법 제52조규정에의 거일 반공매함

1. 견물표시 재산목록과 같음

재 산 목 록

연번	재산의 표시	구 조	평 수	용 도
	구 동 번 지			
1	동래문구 창신동 442	목조도단층2층	54.95	구경상재도록·내문이후
2	〃 445	〃 평가건	12	〃 창고
3	용두동 23	〃	10.20	용두역사
4	〃	〃	1.40	동부속건물
5	〃	〃	8.96	동보선창고
6	성동구 행당동 168	목조와습평가건	4.66	왕십리역사
7	〃	〃 도단층평가건	50.75	공장사무실수지
8	〃	〃 도단층상우	113.10	차고
9	〃	〃 평가건	10	공장창고
10	〃	〃 상우	40.75	보선창고
11	〃	〃 평가건	2.25	상동역
12	성동구 성수동 1가 656-50	〃	8.32	상후원역
13	〃 72-2	〃	6	서뚝역
14	성동구 화양동 135-4	〃	6	화양역
15	〃 공장동 304-2	〃	6	광장역
16	〃 행당동 168	〃	7.80	보선창고
17	〃 화양동 135-4	〃	6	〃
18	용산구 후암동 251- 15-13-253-2	목조와습 2계간	49	후암동사무소

2. 입찰일시 서기 1966년 11월 21일 10시

1. 입찰장소 당시 세무국 입찰실
2. 입찰방법 일반 경쟁 입찰
3. 입찰등록 서기 1966년 11월 19일 12시까지 등록자와 시세 국세 납세 평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인감포함)
4.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할이상 현금이나 시중금융기 관보증수표를 납부한다
5. 철거 및 대금 납부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지 1이상 징기예금을 하여야 하며 대금 완납 후 10일이내에 완전 철거하고 경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약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함
6.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 판매파로 문의 하시앞
7. 위 공고학

서기 196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서울특별시공고제188호

간호원 취업 희망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대상자: 간호원면허 소지자로서 35세 미만인자
2. 등록기일: 서기 1966년 11월 14일 ~ 11월 18일
3. 등록장소: 보건사회국 의약과
4. 제출서류
 - 1) 등록서 (소정양식) 1통
 - 2) 면허증자본(원본제시) //
 - 3) 이력서 //
 - 4) 사진 1매
5. 기타 상세한 것은 보건사회국 의약과로 문의 할 것

※금번 실시하는 등록은 자동적인 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서기 196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서울특별시공고제189호

채비지 매각 입찰공고(제도)

1. 재산의 표시 벌지재산 목록과 같음
2. 입찰 장소 도시계획국 서무과
3. 입찰 일시 서기 1966년 11월 18일 10시
4. 입찰 방법 일반경쟁 입찰
5. 입찰 등록 서기 1966년 11월 16일 12시까지 서무과에 접수시킬 것
(등록서에 국세 시세 납세필증첨부)
6. 입찰보증금 입찰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협금 또는 시중은행의 보증수표를 납부함
7.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애용함
 -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이상의 자립거축증명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예매계약을 체결하고 낙찰액에서 3할 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토지대금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8. 거상물의 철거

매매물건의 거상물철거, 보상명도에 관하여는 일체 매수자가 책임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서 무과에 문의 할 것

의와같이 공고함

서기 1966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財產 目 錄

No.	水地 區 區 圖 符號	面積 面積 面積	備	考
1	159	마	22.40	

2	164	216.00	
3	132	178.80	
4	204	1.20	
5	206	12.00	
6	215	52.80	지상물있음
7	〃	79.40	〃
8	〃	88.60	〃
9	〃	98.50	〃
10	〃	60.00	
11	223	11.30	
12	235	62.10	
13	2 가	45.00	
14	2 나	66.50	
15	3	745.00	지상물있음
16	5	120.80	
17	10 가	146.30	
18	18 나	17.10	
19	11	141.20	
20	34	102.00	
21	35 계	32.50	
22	36	36.00	
23	37	174.00	
24	82 가	200.00	
25	〃 나	100.00	
26	〃 나	100.00	
27	〃 다	109.50	
28	83	181.60	
29	84	141.10	지상물있음
30	85 가	39.90	

31	86-1	가	24.50
32	86-1	나	210.50
33	86-2	나	45.00
34	86-2	다	72.80
35	87		122.00
36	89	가	145.80
37	91		126.50
38	101	다	21.30
39	106		78.30
面牧地區			
1	37		84.20
2	64		21.20
3	106	라	24.00
計			
			129.46
西橋地區			
1	94	가	7.70
2	94	나	7.00
3	98		24.40
4	101		11.10
5	178	나	6.90
6	151		9.10
7	194	커	33.60
8	199	터	43.00
9	201	나	35.90
10	201	가	39.20
11	201	다	27.70
계			
			245.60
吉音地區			
1	工區管轄	마	25.00

계	25.00
합계	4,728.35

◎서울특별시공고제190호

시유재산공매입찰공고

다음표시 시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26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공매함

1. 입찰일시 서기 1966년 11월 22일 10시
2.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입찰실
3.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4. 입찰등록 서기 1966년 11월 21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세, 납세
필증 및 인감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5. 입찰보증금 입찰금액 1할이상현금이나 시중금융기관보증수표를 입찰
과동시에 납부함
6. 매매계약 및 대금납부방법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낙찰금
액의 3할공제한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매각재산의 지적계산은 가분할임으로 확정후 다소 증감이 생할 것을
예상하고 계약할것임
8.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 재무국 판례과에 문의하시암
9. 재산의 표시

공고 번호	구	동	지번	지목	평	수	비	고
1	종로	서린동	42-1	대		493.20		
〃	〃	〃	42-8	〃		2		
〃	〃	〃	42-9	〃		2.3		
〃	〃	〃	44-10	〃		9	연화조평가건1동	
〃	〃	〃	42-9	전		1.5	공중변소1동	
〃	〃	〃	〃	〃		1.5		
〃	〃	〃	〃	그네		4	률	

夕	夕	夕	夕	미끄름대	4 틀
夕	夕	夕	夕	등책	1 식
夕	夕	夕	夕	벤치	8 개
夕	夕	夕	夕	철문	4 짝
2	동마문	승인	317-2	내	9.2평
夕	夕	夕	317-1	夕	1.55
夕	夕	夕	夕	전	549.73

목조스레트옥
개래계 강13동

위 공고함

서기 196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서울특별시공고제191호

시유건물(천거 조건부) 매각입찰공고

다음표시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거일 반공매함

1. 건물의 표시 중구태평로 2가 7-1.8.9.10.11.12.13.14.14-1 15.16번
지 배690평 위치상 인화조와읍 3계전사무실 1동의 2동연건평 111344평
2. 입찰일시 서기 1966년 11월 22일 15시
3.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4. 입찰장소 당시 재무국 입찰실
5. 입찰등록 서기 1966년 11월 21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시세국세납세 필
증 및 인감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6.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3할이상현금이나 시중금융기관 보증수표를 납
부한다
7. 철거 및 배금납부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 금액의 100분
지 1이상정기예금을 하여 배금을 납부하고 30일이내에 완전철거하고 경
지를하여야 하며 이를 위약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겠음
8. 기타 상세한것은 관제과로 문의하시암

위 공고함

서기 196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 김 천 육

◎서울특별시공고제192호

서기 1966년 산 추곡수매 요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추곡수
남 장소별 일자를 지정하니 각의무자는 이기간내에 빠짐없이 납부 하시기바
랍니다

서기 1966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김 천 육

수 납 장 소	수 납 일 자	
	1 회	2 회
휘경동사무소	11.17	11.27
망우출장소	18	30
장안동사무소	21	29
천호농협창고	19	26
송파 ◇	17	23
세곡동 ◇	18	25
연주출장소	23	30
노해 ◇	17	26
승인 ◇	18	29
옹암동농협창고	19	28
신동출장소	18	24
오류 ◇	22	28
양동 ◇	22	28
가양동사무소	19	29
대림동 ◇		26
판악출장소	16	25
삼평경미소	21	30

13423

2406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193호

주소 또는 거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26 이례숙의 19명

납입고지서 66년도 수시분

1. 납부기한 서기 1966년 11월 30일

2. 납부장소 한국상업은행 본점 및 시금고과 또는 당시 도시 계획국서
무과

상기 분담금납입고지서를 66년 11월 3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및
거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납부기일을 66년 12월 4일로 정하
여도시계획법 제 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함

서기 1966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공사 송달문 내역

수 부 No.	지목	물 건 자	채 납 액	납 입 의 두 자	
				주 소	성 명
77	田	面牧洞 644-2	100,255	麻浦區孔德洞 426	李惠淑
5	畜	〃 715-1	140,290	東大門區三聖洞 558-23	洪蘭杓
88	田	〃 608	651,210	〃 山11-3	安升植
4	〃	中谷洞 210	632,335	西大門區付岩洞 384	金聖璽
61	〃	面牧洞 661	100,060	東大門區昌慶洞 11	安基景
124	〃	〃 786	67,146	〃 頤農洞 152-41	朴且順
104	〃	〃 588-2	115,094	城北區教岩洞 140	崔宗泰
95	〃	〃 591-4	128,336	東大門區昌慶洞 205-217	金沐瑞
94	〃	〃 610	72,263	城東區崇義洞 373	金新煥
98	〃	〃 599-1	82,409	東大門區憲農洞 152-41	朴且順
128	〃	〃 712-1	65,295	〃 558-23	洪蘭杓
92	〃	中谷洞 199	283,233	〃 榮洞 26-1	李清鉉
97	〃	面牧洞 588-1	111,800	〃 面牧洞 344	金光吉

13	〃	中谷洞	196	85,188	〃	답십리동	88-16	李世熙
120	〃	面牧洞	638-2	204,139	城東區上往十里洞	220	尹仁炳	
33	〃	〃	664-2	34,528	〃	新堂洞	120-24	任東淳
112	〃	〃	613-2	171,849	東大門區鍾陵洞	3	崔用錫	
39	〃	〃	663	37,182	〃	무교동	13	李相玉
B 25	〃	〃	688-1	463,294	〃	안암동5가	110-3	金弼相
C 5	〃	〃	-2		〃	답십리동	103	박성훈
20	〃	中谷洞	195-2	74,734				

◎서울특별시공고제194호

분묘이장공고(제1차)

소재지	지번	기수	소재지	지번	기수
서대문구성산동	산11의 19	38	서대문구성산동	241의 3	1
〃	산 11의 29	31	〃	241의 2	1
〃	산 191의 6	11	〃	산 227	9
〃	산 11의 26	16	〃	15의 1	1
〃	산 27의 1	20	마포구망원동	215의 2	1
〃	산 30	11			
〃	산 28	11			
〃	산 29	26	계		178

상기 지상에 매장된 분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6조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진설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실시중이오니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동시행 규칙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개장할것을 공고함. 다만 연고자는 1967년 1월 21일까지 이장완료하고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신고하여 소정의 보상비를 지급받을 것이며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인정 당 시에서 임의 개장 하겠습니다.

서기 1966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서울특별시공고제195호

조리사 강습에 관한 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강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서기 1966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강습내용

- | | | |
|---------|----------|--------|
| 가. 위생법규 | 나. 공중보건학 | 다. 영양학 |
| 라. 식품학 | 마. 식품위생학 | |

2. 강습기간

자 1966년 12월 18일부터 1967년 2월 15일까지 (60일간)

3. 강습장소

서울고등기술학교 용산구 갈월동87번지

4. 강습인원 ○○명

◎서울特別市公告第196號

自家用 自動車登錄(世稱남바交付)에 關하여 알리는 만큼

自動車登錄은 道路運送車輛法에 依한 所有權의 公證行為로서 過去의 自動車
使用許可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書類와 要件이 具備되어는
何等의 制約없이 登錄을 承認하고 登錄番號를 指定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 1966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具備書類 및 要件

- | | |
|--------------------------------------|--|
| 가. 新規登錄申請書 | |
| 나. 印鑑證明(申請人) | |
| 다. 出處證(輸入免狀製作證新規登錄用謄本等) | |
| 라. 讓渡證 | |
| 마. 讓渡人의 印鑑 | |
| 바. 代替廢車用新規登錄用謄本(但外國人所有車輛을 讓渡할 경우 境遇에 | |

限함)

사. 委任狀(本人이 出席치 않음을 境遇에 限함)

아. 新規検査申請書

자. 納稅完納證明(國稅 및 地方稅)

차. 自動車原動機 및 車臺番號刻字申請書

2. 手數料

가. 自動車新規登録手數料	1,000원
나. 自動車新規検査手數料	2,530원
다. 自動車検査代行手數料	470원
라. 現品寫眞代	100원
마. 車臺 및 原動機番號刻字手數料	135원
바. 自動車登録番號標代	280원
	計 4,515원

自立貯蓄 新規登録(自家用) 50,000원

新規検査 1,000원

그러함에도 市民께서는 自動車의 登録을 “남바를 낸다” “檢査證을 낸다”는 等으로 그릇 認識하여 이리한 節次는相當히 까다로우며 어려운 것으로서 市廳周邊에 散在하여 있는 所謂 “부로카”에 委託하는 것이 가장 容易하게 登錄된다고 驚惑되어 法定手數料以外에 手續費係로 多額의 金品을 이들에게 滋腹當하고 있어 市民께서는 不當한 損失을 입고 있을 뿐아니라 擔當公務員의 威信마저 損傷시키는 事例가 非一非再합니다

自動車를 所有하시거나 所有하고자 하시는 市民께서는 “부로카”를 通하지 마시고 直接當市觀光 運輸局車輛課에 出席하시여서 申請하시기 바라며 申請을 하시면은 最短時日内에 處理하여 드리겠습니다

申請上 不明事項은 直接問議하시면 언제든지 擔當公務員이 詳細히 親切하게 알려드리 겠아오며 法定手數料以外에는 如何한 名目의 手續費가 所要되지 않음을 再強調하오니 “부로카”들의 甘言利説에 驚惑되어 不當한 損失을 當하시는 일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197호

시 유건물(철거 조건부)에 각일 찰봉고

서기 1966년 11월 21일

서울特別市長 金 玄 玉

1. 건물 표지 : 1) 서대문구 현저동 45~46 위치상목조 2층 연면적 35평
2) 동대문구 용두동 663목조와습 21평
2. 입찰 일시 : 서기 1966년 11월 25일 10시
3. 입찰 장소 : 당시 재무국 관제과
4. 입찰 방법 : 일 반 경쟁 입찰
5. 입찰 등록 : 서기 1966년 11월 24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세 납세 필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할이상 현금이나 시중 금융기관 보증수표를 납부한다
7. 철거 및 려금납부 :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배금을 납부하고 10일 이내에 완전철거하고 정지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약 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겠음

◎서울특별시공고제198호

1. 건설부 고시 제2852호(1966년 11월 9일)로 고시된 국민학교 시설부지조성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트지 수용법 제20조에 정규하여의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수용할토지 면적과 갈음
나. 공고장소 시청제시판
다. 공고기간 자 1966년 11월 22일
지 1966년 12월 1일 (10일간)

서기 1966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육

土地調査

所在地	地番	品目	實測 地積	收用 面積	所有權以外의 權利 및 내용	權利者의姓名	狀況
城東區金湖洞山1街	11-1	林	3,056	3,056	金湖洞1街山1-1 姜炳烈 (財產管理人)	中區獎忠洞2街46 崔培遠	
〃	130-11	垈	38	38		金湖洞1街130-11 徐昌鎬	
〃	130-13	〃	34	34		金湖洞1街130-13 申鉉綺	

◎서울특별시공고제199호

시유재산공매 입찰공고

다음표시 시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2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공매 함
서기 1966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옥

- 입찰일시 : 서기 1966년 11월 29일 11시
- 입찰장소 : 당시 재무국입찰실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등록 : 서기 1966년 11월 28일 12시까지 등록자의 시세 국세납세
필증 및 인감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1할이상 현금이나 시중금융기관 보증수표를 입
찰과 동시에 납부함
- 매매계약 및 대금납부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
액의 3할공제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매매재산의 지적 : 재산은 가분할임으로 화정후 다소 증감이 생할것을
예상하고 계약할것임
- 기타 : 상세한 것은 당시 재무국 관제파에 문의 하시업
- 재산의 표시 : 별첨목록참조

위공고함

13429

2409

재 산 목 록

공고 번호	구 동	지 번	지 목	평 수	고 비
1	종로구 서린선	42-1	대	493.20	
"	"	42-8	"	2	
"	"	42-8	"	2.3	
"	"	44-9	"	10	
"	"	42-2	전	9	인화조평가진 1동공 총면소1동
"	"	"	"	1.5	
"	"	"	그네	4틀	
"	"	"	미끄럼대	1틀	
"	"	"	등책	1식	
"	"	"	벤치	8개	
"	"	"	철문	4쪽	
2	동대문구승인동	317-1	대	9.2평	
"	"	317-1	"	1,550	
"	"	"	건	549.73	특조스태트우개 해체 13장

◎서울특별시공고제201호

주택건설용 대지 분양공고

1966년도 당시 주택 건설 용내지를 다음 요령에 의하여 무주택 시민을 대상
으로 분양함

서기 1966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현우

1. 분양신청절차

가. 구비서류

- (1) 분양 신청서 (당시 소정 양식)
- (2) 무가우 증명 1통
- (3) 인감증명 1통

(84) 공 고

2. 대지분양 내역

지 구 별	분양 평수	분 양 평 당 가 격	평 양 평수	평 양 당 가 격	신청 금	비 고
서대문구용암	24	4,800	53평	254,400	신청시	1동지
"	1	3,350	36	120,600	일시불	2동지
서대문구가파동	181	3,800	40	152,760	"	1동지
"	56	3,600	60.5	217,800	"	2동지
"	51	3,300	48.9	161,370	"	3동지

단: 대지평수 및 금액은 호수에 따라 중간이 있으며 호별 추첨후 추정 또금 환불키로 함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1966년 12월 12일부터 1966년 12월 13일(2일간)

◎서울특별시공고제202호

서기 1966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김 현 옥

1. 공 시 대 용: 수유 및 불광토지구획 정리지구내토지 소유자로서 토지 구역 경리비 분담금 체납자에 대한 납입 독촉임

2. 년 도 기 분: 1966년도 수시분

3. 주소또는거소:

4. 독촉납입기한: 수유지구 1966년 11월 4일

불광지구 1966년 11월 21일

5. 납 입 장 소: 당시도시계획국 서무과

상기 독촉장을 수유지구는 1966년 11월 6일 불광지구는 1966년 11월 14일 송달코자 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함으로 독촉기한을 1966년 11월 일로 정하여 공고함

收納 簿番號	地目	物 件 地	金 額	住 所	姓 名
	田	彌阿洞 797	6,546	彌阿洞山 75	嚴永川
	畜	夕 809—1의3	249,326	鍾岩洞 99	李長喜
	畜	夕 803—6	16,077	彌阿洞 542—3	咸元植
	林	夕 山153—6의4	135,327	新門路1街 58—5	李日駿
	田	夕 817	58,982	城北洞 157—12	조차석
	林	夕 山153—1의1	95,364	明倫洞 4가 206—50	張舜明
	畜	夕 山154	15,592	夕	金仁實
	田	夕 239—3	9,163	彌阿洞 405	李甲俊
	畜	夕 240—6의2	72,880	惠化洞 10—14	全永五
	林	夕 山130—1	34,727	新設洞 26	秦音松
	畜	夕 781	183,183	觀水洞 129	李熙澤
	林	夕 山140—3의5	171,660	中林洞 157	김영희(자 풍상자)
184	田	夕 148—2	120,120	貞陵洞 130—239	金貞子
222	柞	水踰洞 71	21,964	路十里 12—192	全仙淑
225	田	夕 114	170,208	仁義洞 57—6	金宜士
234	夕	夕 77—19	52,321	水踰洞 93	孫枝煥
239	夕	夕 75—9	23,100	黑石洞 45—9	金成一
246	夕	夕 77—8	1,270	東仙洞3가 16—15	韓元錫
259	夕	夕 110—3	33,110	夕 2가 245	全永光
265	塗	夕 115—17	21,521	下往十里洞 49	尹九空
266	夕	夕 115—18	21,367	三仙洞3가 44	李貞淑
285	田	水踰洞 136—3, 137—2	96,442	三仙洞5가 133—2	尹興老
287	夕	夕 102—3	115,615	會賢洞1가 194	金信權
306	夕	夕 109—6	38,808	水踰洞 95	李庚淳
312	夕	夕 56	8,316	乙支路2가 199	立山榮吉
408	塗	彌阿洞 133	76,422	三仙洞3가 87	吳浩洙
423	畜	夕 365	129,860	彌阿洞山111	池義順
425	田	夕 366	25,217	下月谷洞 88—226	洪任順

429	〃	〃 258	98,829	彌阿洞 259~1	金潤玉
450	〃	〃 130~9	11,742	〃 130~9	都勝榮
452	〃	〃 130~2, 130~7	20,135	〃 130~7	金世中
453	垈	〃 137~2, 137~6	29,837	崇仁洞 56~47	都洛孝
454	田垈	〃 130~6, 130~14	17,941	彌阿洞 130~6	徐玉禮
473	墳	〃 301~2	166,243	內資洞 193	尹興甲 外1
481	田	〃 257	125,779	彌阿洞 257	조무근
503	〃	〃 256	52,745	昌信洞 138~68	權根弘
511	垈	〃 293	74,305	彌阿洞 550~23	金澤姬
19	垈	大棗洞 123~3	24,750	大棗洞 125	李玉蘭
21	〃	〃 123~6	31,400	〃 123~6	李尹衡
25	〃	〃 123~35	10,000	〃 123~35	金秀權
32	田	〃 132 127~3	60,350	〃 132	李甲順
46	〃	〃 107~1, 108~1	89,350	漢江路3街 40	李康燮
69	〃	〃 116~1	19,450	大棗洞 116~1	姜明秀
77	〃	〃 116~4, 111~3	117,600	佛光洞 332	中學均
100	林	〃 산4~1	140,300	厚岩洞 244~11	朝鮮農林 株式會社
105	田	〃 110~31	20,000	大棗洞 110~31	李明吉
112	〃	〃 144~1	40,550	〃 10	任後龍
116	垈	〃 143~19	415,800	佛光洞 152	李今成
159	垈	〃 113~24	55,550	碌磻洞 118~32	姜壽貞 外1人
160	〃	〃 113~23	31,050	黑石洞 232~4	彰文學園
165	〃	〃 113~7	34,300	佛光洞 280	成吉源
166	〃	〃 113~8	32,550	龍江洞 246~1	黃命根
191	〃	〃 8, 164~10	457,050	普門洞 146	金龍勳
206	垈	〃 157~5	543,350	漢江路2街 2~37	韓致錫
235	垈	葛峴洞 130~7	18,250	佛光洞 308	韓七鳳
251	垈	〃 40	300,100	孔德洞 122~14	金俊水
252	〃	〃 57~2	17,800	葛峴洞 57~2	梁德龍

256	畜	葛峴洞 41~2	15,000	△ 41	趙敬植
257	夕	△ 41~3	11,000	葛峴洞 41	許 檜
271	夕	△ 61~19	19,400	△ 61~19	方皓圭
273	田	△ 63~4	52,000	安國洞 123	全東燮
274	埜	△ 63~3	117,450	佛光洞 302	張甲禮
277	夕	葛峴洞 127~3 佛光洞 310~8	11,700	△ 163	吳德盛
290	畜	갈현동 125~1	26,100	義州路1가 168	朴鍾煥 外2人
300	田	△ 127~1	11,350	佛光洞 308	鄭尊模
321	畜	△ 66~4	17,200	萬里洞2街 226	盧大奎
324	夕	△ 66~10	15,800	大觀洞 15~41	韓東秀
329	夕	△ 125~6	50,650	內需洞 70~80	全學俊
345	夕	△ 38~1	94,600	武酒洞 3	李元明
356	夕	△ 98~4	109,900	갈현동 81	李性殷
358	夕	△ 95	63,550	筆洞2街 134~1	成鶴哲 外1人
375	夕	佛光洞 310~7	9,900	佛光洞 308	鄭尊模

④ 서울특별시공고제20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분광 토지구획정리 지구 제4부 구역에 대한 환지
설치과 환지 예정지를 구획정리 사업법 제46조,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지
정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지 및 지정도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서대문구청 건
설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종류에 공란다

서기 1966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